

제350회 임시회  
2016. 8. 30.(화)

# 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미세먼지 경보에 관한 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  
수석전문위원

충청북도 미세먼지 경보에 관한 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장선배 의원 등 7인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6년 8월 19일
- 회부일자 : 2016년 8월 22일

3. 제정이유

- 「대기환경보전법」과 환경부에서 제시한 표준조례안에 따라 미세먼지에 관한 경보의 내용, 기준, 방법 및 조치사항 등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미세먼지 오염도 경보를 효과적으로 시행하여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함.  
※ 「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표준조례」(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-4200, '14.10.31)

4. 주요내용

- 가. 미세먼지(PM-10, PM-2.5) 및 경보에 관해 정의함 (안 제2조)
  - 미세먼지(PM-10, PM-2.5)경보제 본격 시행('15. 1월)
- 나. 미세먼지 경보의 발령 및 해제기준을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에 따라 규정함. (안 제4조, [별표 1])
- 다. 미세먼지 경보 방법에 대해 규정함 (안 제5조)
- 라. 경보에 따른 조치사항을 규정함 (안 제6조, [별표 2])
  - 건강영향 등을 고려하여 국가에서 민감군과 일반인을 구분한 조치사항 권고
- 마. 미세먼지 경보 발령시 조치사항 추진과 관련해 인근 시·도와의 협력에 대해 규정함. (안 제9조)

바. 대기오염측정망의 확대 설치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규정함  
(안 제10조)

## 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대기환경보전법」과 환경부에서 권고한 표준조례안에 따라 미세먼지(PM-10, PM-2.5) 경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,
  - 미세먼지(PM-10) :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( $\mu\text{m}$ ) 이하인 먼지
  - 미세먼지(PM-2.5) : 입자의 크기가 2.5마이크로미터( $\mu\text{m}$ ) 이하인 먼지
- 안 제2조에 “미세먼지”, “경보”, “경보단계”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,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, 안 제4조에 따른 [별표 1]은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별표7에 따라 오염 경보 단계별 미세먼지 농도 기준을 규정하였음.
- 안 제5조에 경보 방법을 안 제6조 및 [별표2]에는 미세먼지 경보에 따른 도지사의 조치사항을 도민 건강보호 부문과 미세먼지 저감 노력 부문으로 구분하여 규정하였음.
- 안 제8조는 경보 발령 시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인 차량의 운행자와 사업장·공사장 운영자의 미세먼지 저감 노력에 대해 규정하였고, 안 제9조에서는 시·도간 협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.
- 2013년 7월 16일 「대기환경보전법」 개정을 통해 미세먼지가 국민의 건강·재산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오염도를 예측하고 그 결과를 발표토록 하고, 2015년 1월부터 미세먼지(PM-10, PM-2.5) 경보제를 시행하고 있음. 따라서 미세먼지로 인한 오염으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도차원의 조례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.
-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에 따른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경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법적, 내용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